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46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윤준병 · 서영석 · 소병훈
이성윤 · 임미애 · 송옥주
임호선 · 이병진 · 강준현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또한, 위탁선사가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다 보니 안전·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5조의2 신설 등).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의3(중전의 제15조의2)제1항 중 “보조항로를”을 “보조항로 또는 공영항로를”로 한다.

제15조의2(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이하 “공영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이하 “공영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영항로운영기관

이 더 이상 공영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그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영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⑥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운송사업자에게”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에게”로 한다.

제5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공영항로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면허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기준) ①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u>해당 사업을 하는 데 있어</u> <u>도서주민의 교통불편이 발생</u> <u>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u> <u>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u>
<u><신 설></u>	<u>제15조의2(공영항로의 지정과 운</u> <u>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u> <u>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u> <u>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u> <u>가가 운영하는 항로(이하 “공</u> <u>영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u> <u>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공공기관등(이하 “공영항</u> <u>로운영기관” 이라 한다)에게</u> <u>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u> <u>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u>

관리 등 공영항로의 운영과 관련
한 사항은 공영항로운영기관
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계획
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더 이상 공영항로
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공영항로
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
려되면 그 공영항로운영기관에
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
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영항로의 운영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공영항로의 지정

	<u>을 취소할 수 있다.</u> 1. <u>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u> <u>가 설치된 경우</u> 2. <u>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u> <u>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내</u> <u>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u> <u>요가 생긴 경우</u> 3. <u>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u> <u>으로 인하여 공영항로 지정</u> <u>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u> ⑥ <u>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u> <u>관련하여 공영항로의 지정 기</u> <u>준 및 절차, 공영항로운영기관</u> <u>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제15조의3(선박건조의 지원) ① -
국가는 <u>보조항로를</u> 운항하는	----- <u>보조항로 또는 공영항로</u>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	를-----
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u>여</u>	----- <u>여</u>

<u>객운송사업자에게</u> 여객선의 운 항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7. (생 략) ③ · ④ (생 략)	<u>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 영기관에게</u>-----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5조의2에 따른 공영항 로의 지정 · 운영에 필요한 경 우</u>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